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1. 6. 30.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81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 (2001. 6.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은규

가. 제안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1. 6. 30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둘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2. 12. 31일까지 1년 6월동안 연장하면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본격적인 불법·혐오광고물의 정비 및 광고물의 수준향상을 통하여 국제적인수준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대책으로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유동광고물 제외)을 신설하여 추가하면서 행정관리국과 건재순에 따라 사무내용을 정리하고,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는 위 옥외광고물 사무를 삭제함.(안 제4조)
- 구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1. 6. 30일에서 2002. 12. 31일까지 1년 6월동안 연장함.(안 조례 제473호 부칙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1. 6. 30일까지 존속하도록 설치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동 기능전환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2002. 12. 31까지 1년 6월동안 연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6. 15일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연장승인 사항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4조제2항제18호에는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였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유동광고물은 제외하고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는 유동광고물 관리로 개정하였음.
- 구 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1. 6. 30일까지 규정했던 동 조례 제473호 부칙 제4조의 규정을 2002. 12. 31일까지로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은 2001. 7.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2001. 1. 8일 서울시장 지시에 의하여 서울시의 광고물 관리업무가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도 서울시와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서 광고물 관리업무를 주관하도록 서울시장으로부터 2001. 1. 17일 관리부서 조정 협조와 2001. 2. 19일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도 지난 3월 12일 구청장 방침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주민자치과에 광고물특별정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광고물 인·허가 등 법정 광고물 관리기능의 국간 이관은 동 조례안과 동 시행규칙을 정비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동 정비대책 수립당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1. 6. 30일이고, 존속기한 연장승인도 불확실하여 법규정비가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며,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구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는 옥외광고물 중 유동광고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옥외광고물 관리부서간 업무혼동이 초래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동 조례시행규칙도 조속히 정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동기능전환의 정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통보가 늦어 동 조례의 개정시기가 지연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배치되는 소급입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적기에 자치법규가 정비·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조례개정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회경시가 아닌가?
- 답변요지(이춘기 행정관리국장) : 의회경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과 연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였기 때문임.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조례와 구청장방침 중 우선 순위는 어느 것인가?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조례임.

5. 토론판결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일자 : 2001. 6.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1.6.30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동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월동안 연장하면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본격적인 불법·혐오광고물의 정비 및 광고물의 수준향상을 통하여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대책으로,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유동광고물 제외)을 신설하여 추가하면서 행정관리국과 전재순에 따라 사무내용을 정리하고,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는 위 옥외광고물 사무를 삭제함.(안 제4조)
- 나. 구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월동안 연장함.(안 조례 제473호 부칙 제4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 제6115호) 제102조 및 제111조
-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6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서울특별시 승인 완료(행정13101-2625, 2001.6.15)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수·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
4. 의식·회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1.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2. 동행정에 관한 사항
13.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16.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17. 자연보호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18.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유동광고물 제외)
19. 공보행정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0.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2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2.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23. 생활체육·전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유기장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노래연습장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7. 무도장·무도학원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9.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30.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31.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2.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3. 병사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34. 담당관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2항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동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조례 제473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조중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473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조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행정관리국) ①(생 략)</p> <p>②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수·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 4. 의식·회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동행정에 관한 사항 7. 동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3. 공보행정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4.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 <p>제4조(행정관리국) ①(현행과 같음)</p> <p>②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수·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 4. 의식·회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1.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2. 동행정에 관한 사항 13.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 16.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 14.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 |
| 17. 생활체육 · 전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평가에 관한 사항 |
| 18. 체육시설업 신고 · 등록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15. 새마을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19. 유기장업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16.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
| 20. 노래연습장 등록 · 관리에 관한 사항 | 17. 자연보호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
| 21. 무도장 · 무도학원업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유동광고물 제외) |
| 22.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 평가에 관한 사항 | 19. 공보행정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 23. 새마을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 20.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
| 24.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 21. 문화 · 예술에 관한 사항 |
| 25. 자연보호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 22.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
| 26. 문서 · 관인 · 민원상담 및 민원 안내에 관한 사항 | 23. 생활체육 · 전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27.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 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 24. 체육시설업 신고 · 등록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 28. 제증명의 발급 · 진정의 접수처리 · 호적에 관한 사항 | 25. 유기장업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 29.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26. 노래연습장 등록 · 관리에 관한 사항 |
| 30. 구 · 동 민원업무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27. 무도장 · 무도학원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28. 문서 · 관인 · 민원상담 및 민원 안내에 관한 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 <u>31. 병사에 관한 사항</u> | <u>29.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u> |
| <u>32. 담당관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 <u>30.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u> |
| | <u>31.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u> |
| | <u>32.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
| | <u>33. 병사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u> |
| | <u>34. 담당관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
| 제8조(건설교통국) ①(생 략) ②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생 략) 7.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8.~41.(생 략) | 제8조(건설교통국) ①(현행과 같음) ②————— 1.~6.(현행과 같음) 7. 유동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8.~41.(현행과 같음) |
| 부 칙(2000년 12월 5일 조례 제473호) | 부 칙(2000년 12월 5일 조례 제473호) |
| 제4조(한시기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본청 기구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4조(한시기구)————— ————— 2002년 12월 31일————— |